





1. 2. (생략)

3.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원재료 및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하는 경우

가. (생략)

나. 해당 환급대상 원재료의 수불자료(세관장이 환급대상 원재료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)

②·③ (생략)

제31조(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)

①·② (생략)

<신설>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 
-----  
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  
출납자료-----  
-----  
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생산자는 수출금액 또는 수출자 등에게 공급한 수출물품의 국내 공급금액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○ 간이정액환급금 산정을 위한 가격 기준 확대

(국내 공급금액이 수출금액 보다 적은 경우로서 내국신용장, 구매확인서,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국내 공급금액이어야 한다)을 사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, 생산자는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공급금액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2조(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) ① ~ ③ (생략)  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(법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, 공급을 포함한다)하거나

제32조(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일 소급 적용 신청 항목 마련

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영 제14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최초 환급업체의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⑤ ~ ⑦ (생략)

제49조(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)  
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-----  
-----  
-----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(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)이 없는 자가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적용승인일 이전 수출물품 등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49조(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) --  
-----  
-----  
-----

방법으로 확인한다.

1. (생략)

2.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

가.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 
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

나. ~ 라. (생략)

3. (생략)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---  
-----

가.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 
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,  
다만,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4  
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  
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  
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또  
는 물품의 공급사실을 확인 할  
수 있는 서류(예: 거래명세서)  
상의 공급일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○ 월단위 세금계산서 발급  
시점과 제증명 발급시점  
불일치 문제 해소

제54조(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분증발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
5. 해당 수출용원재료의 수불자료 (세관장이 환급대상원재료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)

③ ~ ⑤ (생략)

제99조(환급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) ① 환급등의 신청인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54조(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출납자료  
-----  
-----  
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99조(환급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1.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“소요  
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 
대한 서류”란 다음 각 목의 서류  
를 말한다.

가. (생 략)

나.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 등  
가목의 산출근거를 증명하는  
자료

다. (생 략)

2. ~ 5.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1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 제품출납부-  
-----  
-----

다. (현행과 같음)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제104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04조(재검토기한) -----  
-----  
----- 2024년 7월 1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부칙<관세청고시 제2024-00호(2024. 4. 00.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4월 0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관세환급 시스템의 서식 변경 등을 수반하는 제7조의2관련 별표2·별표4·별지 제3호·별지 제24호, 별표 2의4,

○ 재검토 기한 개정

○ 부칙 설정

별지 제2호, 별지 제5호의2, 별지 제16호 개정 사항은 관세환급시스템의 변경이 완료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환급등 신청 적용례) 제7조의2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22일 이후 수출물품(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공급물품)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(제3조의2 관련)

1.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

| 수출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급신청인     | 수출사실 확인서류   |
|---|-----------|---|
| 2. 규칙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박람회, 전시회 등에 출품한 무상수출 | ○ 제1호와 동일 | ○ 수출신고필증<br>○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확인한 출품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출품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<br>○ 외화입금증명서 |
| 5.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본수출                  | ○ 제1호와 동일 | ○ 수출신고필증  |

[별표 1]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(제3조의2 관련)

1.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

| 수출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급신청인     | 수출사실 확인서류   |
|---|-----------|---|
| 2. 규칙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박람회, 전시회 등에 출품한 무상수출 | ○ 제1호와 동일 | ○ 수출신고필증<br>○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확인한 출품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출품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<br>○ 외화입금증명서 등 외화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5.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본수출                  | ○ 제1호와 동일 | ○ 수출신고필증<br>○ 수출계약용 확인서류  |

○ 무상 수출 사실 확인 서류 명확화

[별표 2] 환급신청서 작성요령(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)

II 작성방법

<신 설>

[별표 2] 환급신청서 작성요령(제7조의2,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)

II 작성방법

- 국내 생산 수출물품 포장용품의 환급신청 방법
  -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을 위해 물품 생산자가 아닌 자가 수출물품을 포장하는 경우, 환급신청서(공통사항, 갑)의 1-⑦ 포장 소요량 구분에 포장용품 소요량이 적용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기재(1-⑥ 소요량 구분은 빈칸) 하고, 환급신청서(수입원재료, 병)에 환급대상 원재료로서 포장용품 사용량 등을 기재

| 1. 신청 내용                      | 1-⑤ 환급 구분 | 1-⑥ 소요량 구분 | 1-⑦ 포장용품 소요량    | 5. 환급 수출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수출물품의 원재료로서 환급신청서 병지에 포장용품 기재 | [3] 개별    |            | [01] ~[06] 중 선택 |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형태 부호 사용 (예: 25) |

- 국내 생산 수출물품 포장용품의 환급등 신청 방법 마련

III 항목별 기재요령

가. 공통사항(갑) 기재요령

1. 신청내역

<신 설>

3. 지급계좌: 환급금의 입금을 받고자하는 계좌번호를 기재

☞ 예시: 은행명: ○○은행 본(지점), 지급은행코드 : 010001, 지급계좌번호: 06013174952

5. 수출물품(개요)

5-⑤. 총 수출금액(FOB): 환급신청서 수출물품(을)에 기재한 수출건의 수출금액 총합계액(FOB)을 기재

III 항목별 기재요령

가. 공통사항(갑) 기재요령

1. 신청내역

1-⑦. 포장용품 소요량구분: 개별환급을 신청하려는 환급신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기재하여 환급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포장용품에 대한 수출물품의 소요량적용방법을 기재

☞ 예시: [01]단위실량, [02]단위설계소요량, [03]수출건별등총소요량, [04]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, [05]1회계연도단위소요량, [06]위탁건별총소요량

3. 지급계좌: 환급금의 입금을 받고자하는 계좌번호를 기재

☞ 예시: 은행명: ○○은행, 지급은행코드: 010, 지급계좌번호: 06013174952

5. 수출물품(개요)

5-⑤. 총 수출금액(FOB): 환급신청서 수출물품(을)에 기재한 수출건의 수출금액(간이정액환급신청서 국내 공급금액 포함) 총합계액(FOB)을 기재

- 국내 생산 수출물품 포장 용품의 환급등 신청 방법 마련
- 환급계좌정보 간소화에 따른 작성요령 등 정비
  - 은행지점코드 정보 폐지
- 간이정액환급금 산정을 위한 가격 기준 확대에 따른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개정

**나. 수출물품(을) 기재요령**

① 수출금액(FOB, 원): 수출신고필증상의 규격별 단가를 기준으로 환급신청 수출물량에 해당하는 수출금액(내국신용장 등 공급금액)을 원화로 기재하며, 수출신고필증 이외인 경우로서 거래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반입(공급, 판매, 적재 등)일의 수출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

**[별표 2의4]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 요령(제15조의5 관련)**

**2. 항목별 기재요령**

**가. 가산금액 지급신청서(갑) 기재요령**

▶ 지급은행

○ 환급금의 입금을 받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란으로 계좌번호를 개설한 은행명(지점), 코드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한다.

☞ 예시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지<br>급<br>은<br>행 | 은행명                    | 코드번호   |
|                  | 한국외환은행 본(지점)           | 010001 |
|                  | 온라인구좌번호<br>06013174952 |        |

**나. 수출물품(을) 기재요령**

① 수출금액(FOB, 원): 수출신고필증상의 규격별 단가를 기준으로 환급신청 수출물량에 해당하는 수출금액(간이정액환급신청시 국내 공급금액 포함)을 원화로 기재하며, 수출신고필증 이외인 경우로서 거래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반입(공급, 판매, 적재 등)일의 수출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

**[별표 2의4]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 요령(제15조의5 관련)**

**2. 항목별 기재요령**

**가. 가산금액 지급신청서(갑) 기재요령**

▶ 지급은행

○ 환급금의 입금을 받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란으로 계좌번호를 개설한 은행명, 코드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한다.

☞ 예시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지<br>급<br>은<br>행 | 은행명                 | 코드번호 |
|                  | 한국외환은행              | 010  |
|                  | 계좌번호<br>06013174952 |      |

○ 간이정액환급금 산정을 위한 가격 기준 확대에 따른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개정

○ 환급계좌정보 간소화에 따른 작성요령 등 정비  
- 은행지점코드 정보 폐지

**[별표 4]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 요령(제47조제1항 관련)**

**II 작성방법**

<신 설>

**[별표 4]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(제7조의2, 제47조제1항 관련)**

**II 작성방법**

- 국내 생산 수출물품 포장용품의 기납증 신청 방법
  -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을 위해 물품 생산자가 아닌 자가 수출물품을 포장하는 경우,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(공통사항, 갑)의 1-⑦ 포장 소요량 구분에 포장용품 소요량이 적용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기재(1-⑥ 소요량 구분은 빈칸) 하고,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(수입원재료, 병)에 환급대상 원재료로서 포장용품 사용량 등을 기재

| 1. 신청내용                   | 1-⑤<br>환급<br>구분 | 1-⑥<br>소요량<br>구분 | 1-⑦<br>포장용품<br>소요량구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기납증(수입원재료, 병)에<br>포장용품 기재 | [3]<br>개별       |                  | [01]~[06]<br>중 선택    |

- 국내 생산 수출물품 포장용품의 환급등 신청 방법 마련

Ⅲ 항목별 기재요령

가. 공통사항(갑) 기재요령

1. 신청내역

<신 설>

Ⅲ 항목별 기재요령

가. 공통사항(갑) 기재요령

1. 신청내역

1-⑦. **포장용품 소요량구분**: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 물품의 포장용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기재 하여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포장용 품에 대한 수출물품의 소요량적용방법을 기재

☞ 예시: [01]단위실량, [02]단위설계소요량, [03]수출 건별등총소요량, [04]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, [05]1회계연도단위소요량, [06]위탁건 별총 소요량

○ 국내 생산 수출물품 포장 용품의 환급등 신청 방법 마련

[별지 제2호서식]

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[별지 제2호서식]

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

|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접수일자 |         | 처리기간 / 즉시 |       |
| 신청인  | 상호      | 대표자       |       |
|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| 통관고유번호    | 사업장주소 |
|      | 주소      |           |       |

| 사업장 내역 |     |         |       |    |
|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|----|
| 사업장명   | 소재지 | 사업자등록번호 | 관할지세관 | 비고 |
|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|    |
|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|    |
|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|    |

| 변경신청 내역 |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|
| 변경 전 세관 | 변경 후 세관 |
|         |         |

변경 후 최초 환급신청일

변경신청사유 :

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급신청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.

20...년 ...월 ...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 관 장 귀하

|            |    |    |    |
|------------|----|----|----|
| 접부서류<br>없음 | 담당 | 주부 | 피감 |
|------------|----|----|----|

[별지 제2호서식]

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[별지 제2호서식]

환급신청기관 [ ]신규·[ ]변경 신청서

|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접수일자 |         | 처리기간 / 즉시 |       |
| 신청인  | 상호      | 대표자       |       |
|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| 통관고유번호    | 사업장주소 |
|      | 주소      |           |       |

| 사업장 내역 |     |         |       |    |
|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|----|
| 사업장명   | 소재지 | 사업자등록번호 | 관할지세관 | 비고 |
|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|    |
|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|    |
|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|    |

| 변경신청 내역 |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|
| 변경 전 세관 | 변경 후 세관 |
|         |         |

※ 최초 환급신청시 '00' 기재

변경 후 최초 환급신청일

변경신청사유 :

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급신청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.

20...년 ...월 ...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 관 장 귀하

|            |    |    |    |
|------------|----|----|----|
| 접부서류<br>없음 | 담당 | 주부 | 피감 |
|------------|----|----|----|

○ 환급신청기관 신규 신청 신설



[별지 제5호의2서식]

■ 신용회복위원회의 다른 문서 중 취급이유처리에 관한 고시 [별지 제5호의2서식]

가산금액 지급신청서(갑)

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|
| 계출번호 | 신청원세사  | 환수번호    | 환수일자 | 처리기간 | 영입 |
|      |        | 세관번호    | 연도   | 입원번호 |    |
| 신청인  | 상호     | 대표자     |      |      |    |
|      | 통관고유번호 | 사업자등록번호 |      |      |    |
|      | 대표명주소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|

지급신청 가산금액 합계

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|
| 관세가산금 | 개소세가산금 | 교통세가산금 | 교육세가산금 | 주세가산금 | 농특세가산금 | 합계 |
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|

가산금액 지급신청 상세 내역

| 항목  | 최초환급<br>번호 | 최초환급<br>일시 | 추정내역   |        | 추가환급내역    |          | 지급신청<br>가산금액<br>(b× $\frac{c}{a}$ )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가산금(a) | 가산금(b) | 환급<br>수번호 | 추가환급금(c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세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개소세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통세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세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세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특세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지급신청 건이 추가된 있을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{을}지에 기재

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지급은행 | 은행명   | 문(지점) | 포도번호 |
|      | 문(지점) |       |      |
|      | 문(지점) |       |      |

「수출입원리코드에 대한 관세 통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급금이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합니다.

20...년...월...일  
신청인 (인명 또는 인)

○○세 관 장 권 위 하

|      |   |    |    |    |
|------|---|----|----|----|
| 출부서부 | ※ 세관장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함<br>1. 피대상금 추정세액내역서<br>2. 추가환급신청서(사본) | 일감 | 두루 | 자감 |
|------|---|----|----|----|

[별지 제5호의2서식]

■ 수출입원리코드에 대한 관세 통 환급이유처리에 관한 고시 [별지 제5호의2서식]

가산금액 지급신청서(갑)

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|
| 계출번호 | 신청원세사  | 환수번호    | 환수일자 | 처리기간 | 영입 |
|      |        | 세관번호    | 연도   | 입원번호 |    |
| 신청인  | 상호     | 대표자     |      |      |    |
|      | 통관고유번호 | 사업자등록번호 |      |      |    |
|      | 대표명주소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|

지급신청 가산금액 합계

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|
| 관세가산금 | 개소세가산금 | 교통세가산금 | 교육세가산금 | 주세가산금 | 농특세가산금 | 합계 |
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|

가산금액 지급신청 상세 내역

| 항목  | 최초환급<br>번호 | 최초환급<br>일시 | 추정내역   |        | 추가환급내역    |          | 지급신청<br>가산금액<br>(b× $\frac{c}{a}$ )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가산금(a) | 가산금(b) | 환급<br>수번호 | 추가환급금(c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세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개소세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통세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세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세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특세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지급신청 건이 추가된 있을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{을}지에 기재

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지급은행 | 은행명   | 문(지점) | 포도번호 |
|      | 문(지점) |       |      |
|      | 문(지점) |       |      |

「수출입원리코드에 대한 관세 통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급금이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합니다.

20...년...월...일  
신청인 (인명 또는 인)

○○세 관 장 권 위 하

|      |   |    |    |    |
|------|---|----|----|----|
| 출부서부 | ※ 세관장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함<br>1. 피대상금 추정세액내역서<br>2. 추가환급신청서(사본) | 일감 | 두루 | 자감 |
|------|---|----|----|----|

- 환급계좌정보 간소화에 따른 서식 등 정비
- 은행지점코드 정보 폐지

[별지 제16호서식]

간이정액환급 [ ] 적용 [ ] 비적용승인 신청서

\* [ ]에는 치러져야 하는 곳에 표시합니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공주필자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처리기간... 표시 |     |
|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호      | 대표자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통관고유번호  | 사업자등록번호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| 담당자 및 연락처  |     |
| 사업장 내역 (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전부 기재)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|
|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| 통관고유번호     | 소재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|

[ ] 적용 [ ] 비적용승인 신청사유

「순출입차량에 대한 반세 통 관급사유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22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[ ] 적용 [ ] 비적용승인을 신청합니다.

20...년 ...월 ...일  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 관 장 귀하

|      |       |    |  |
|------|-------|----|--|
| 접수서부 | 수부    |    |  |
|      |       |    |  |
| 처리   | 승인일   |    |  |
| 내역   | 계상등록일 |    |  |
|      | 계상등록자 |    |  |
| 발    | 부부    | 과장 |  |
|      |       |    |  |

[별지 제16호서식]

■ 수출입차량에 대한 반세 통 관급사유처리에 관한 고시 [별지 제16호서식]

간이정액환급 [ ] 적용 [ ] 비적용승인 신청서

\* [ ]에는 치러져야 하는 곳에 표시합니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주필자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리기간... 표시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호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자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통관고유번호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및 연락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최초 수입일                       | 간이정액환급                     | 최초 수입일     | 비적용승인 이전                 |
| 비적용승인 신청 여부                  | (시행일 계 (4표제) (합) (일) (계단)) |            | 비적용승인 적용 일자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  |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사업장 내역 (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전부 기재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| 통관고유번호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[ ] 적용 [ ] 비적용승인 신청사유

「순출입차량에 대한 반세 통 관급사유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22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[ ] 적용 [ ] 비적용승인을 신청합니다.

20...년 ...월 ...일  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 관 장 귀하

|      |       |    |  |
|------|-------|----|--|
| 접수서부 | 수부    |    |  |
|      |       |    |  |
| 처리   | 승인일   |    |  |
| 내역   | 계상등록일 |    |  |
|      | 계상등록자 |    |  |
| 발    | 부부    | 과장 |  |
|      |       |    |  |

-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일 소급 적용 신청 항목 추가

